


의정활동보고서



제275회 임시회(2015. 1. 26 ~ 2. 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를 300만 도민과
함께 청양의 긍정 에너지로 힘차게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10대 도의원 모두는 오직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상생
협력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한 축을 성실히 수행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신도청의 역사적인 개청으로 경상북도가 우리
나라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의정목표로 삼아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로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살기 좋은 경북 건설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국회, 중앙정치 등이 참여하는 전국민 순회토론회 개최, 전국시민단체와 연대한 서명운동,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의회의 의정활동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민들께서도 강력한 에너지를 모아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도정과 교육행정에서도 큰 성과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국비예산 11조 원 확보, 투자유치 4조 원, 새마을 세계화 추진과 수학능력시험 만점 2명 배출, 시도교육행정 평가 2년 연속 종합 1위,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상위권 입상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신도청의 성공적인 개청과 세계 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의 빈틈없는 준비와 개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교육 행정에 있어 2016년 자유 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철저한 사전준비와 학력신장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청으로 이전하는 도청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2015년도 집행기관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연계된 업무추진 계획이 잘되었는지 살펴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00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17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20
VI. 5분 자유발언		23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23
☐	곽경호 의원(교육위원회)	27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30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34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37

부 록

☐ 조례안(6건)	43
☐ 동의안(2건)	85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75회 임시회는 2015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6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3회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1개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월 26일(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박용선 의원의 “무분별한 청소년 유해환경시설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광경호 의원의 “현행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의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의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 개방 촉구”, 문화환경위원회 김명호 의원의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조례안 6건중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등 2건의 계획안도 원안 가결하였다.

이밖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독도수호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5년 1월 26일(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5년 1월 26일 ~ 2월 6일(12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17회)

○ 위원회

(단위: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4	1	2	2	3	2	2	1		1
누 계	111	7	13	16	13	12	12	10	18	10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6(월)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광경호 의원(교육위원회)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 안전심사 ○ 제27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 6(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안전심사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년~2018년)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6(월) 16:00	☐ 안전심사 ○ 제27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처)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7(화) 11:00 (제1차)	☐ 업무보고 ○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경북테크노파크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8(수) 11:00 (제2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업무보고 ○ 일자리투자본부, 창조경제산업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8(수) 11:00 (제1차)	☐ 업무보고 ○ 감사관, 복지건강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9(목) 11:00 (제2차)	☐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7(화) 11:00 (제1차)	☐ 업무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1. 28(수) 11:00 (제2차)	☐ 업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자원국 및 사업소	
2. 2(월) 11:00 (제3차)	☐ 업무보고 ○ 도 체육회 ○ 생활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6(월) 14:00 (제1차)	☐ 업무보고 ○ 농축산유통국	
1. 27(화) 10:30 (제2차)	☐ 업무보고 ○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1. 28(수)	☐ 현지확인 ○ 김천 딸기 고설재배단지 ○ 상주시 접목선인장 수출단지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7(화) 14:00 (제1차)	☐ 업무보고 ○ 소방본부 ○ 도청신도시본부	
1. 28(수) 14:00 (제2차)	☐ 업무보고 ○ 지역균형건설국	
1. 29(목)	☐ 현지확인 ○ 성주소방서 ○ 고령소방서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8(수) 10:30	☐ 주요 업무보고 ○ 도교육청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9(목)	☐ 현지확인 ○ 경상북도교육연수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 26(월) 11:00	☐ 2015년도 독도수호 관련 주요 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 ()내는 제10대 의회 누계임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12 (121)	12 (119)	10 (100)	2 (19)	(1)			(1)	
조 례 안	소 계	6 (58)	6 (56)	4 (45)	2 (11)	(1)			(1)	
	의 회 제 안	1 (26)	1 (25)	1 (23)	(2)				(1)	
	도지사 제 출	2 (21)	2 (21)	(13)	2 (8)					
	교육감 제 출	3 (11)	3 (10)	3 (9)	(1)	(1)				
규 칙 안		(1)	(1)	(1)						
예산·결산		(8)	(8)	(4)	(4)					
동의·승인		2 (11)	2 (11)	2 (7)	(4)					
건 의 안		(1)	(1)	(1)						
결 의 안		(9)	(9)	(9)						
기 타 안		4 (33)	4 (33)	4 (33)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1)

○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안

(‘14. 11. 28, 장용훈 의원 외 10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1	1	
누 계	1		1	1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 (26)	(15)		1 (2)		(1)	(4)	(3)		(1)
의 회 운 영										
기 경 회 계	(2)						(2)			
행 정 보건복지	(3)	(2)					(1)			
문 화 환 경	(5)	(4)						(1)		
농수산	(3)	(2)					(1)			
건 설 소 방	1 (8)	(4)		1 (2)				(2)		
교 육	(5)	(3)				(1)				(1)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5 (26)	5 (26)				
의회운영						
기획경제	(2)	(2)				
행 정 보건복지	1 (3)	1 (3)				
문화환경	3 (5)	3 (5)				
농 수 산	(3)	(3)				
건설소방	1 (8)	1 (8)				
교 육	(5)	(5)				
특별위원회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8건(조례안 6, 동의안 2)

제출·발의자 (접 수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5. 1. 15)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기 획 경 제 (2015. 1. 16)
"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경상북도공무원 이주지원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5. 1. 16)
"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2018년)	"
한혜련 의원 외 7명 (2015. 1. 15)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문 화 환 경 (2015. 1. 16)
경상북도교육감 (2015. 1. 1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2015. 1. 16)
"	경상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20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12. 1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 12. 29 (제3585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86호)
"	"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87호)
"	"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88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4. 12. 19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 12. 29 (제3589호)
"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3590호)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91호)
"	"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92호)
"	"	경상북도용계동은행나무이식보존 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	" (제3593호)
"	"	경상북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3594호)
"	"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 (제3595호)
"	"	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3596호)
"	"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97호)
"	"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3598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99호)
"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 (제3600호)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01호)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02호)
2014. 12. 12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03호)
2014. 12. 19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604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 자	장소	참석의원	활 동 내 용
의회운영 위 원 회	2014. 12. 26 ~ 12. 27	목포, 구례	위원장 외 14명	○연찬회 개최 - 2015년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 토론 - 영·호남 교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문화환경 위 원 회	2015. 1. 15 ~ 1. 16	영주, 봉화	위원장 외 8명	○현지확인 - 주요 시책 및 사업장 추진현황 파악 및 건의사항 수렴(봉화 백두 대간수목원, 영주 무섬마을)
농 수 산 위 원 회	2015. 1. 5	경북 도청	위원장 외 6명	○긴급 대책회의 개최 - 도내 구제역 발생현황 파악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건설소방 위 원 회	2015. 1. 8	소방 본부	위원장 외 5명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영주시 원당로 건물화재 관련 향후 대책 강구
교 육 위 원 회	2014. 12. 19 ~ 12. 20	성주	위원장 외 8명	○연찬회 개최 - 교육위원회와 도 교육청의 협력 강화 방안 토론 - 경상북도 교육 발전방안 토의
윤리특별 위 원 회	2015. 1. 8 ~ 1. 9	영덕, 울진, 청송	위원장 외 7명	○연찬회 개최 - 경북북부 제1교도소 운영현황 청취 및 시설 견학 - 윤리특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등

VI. 5분 자유발언

□ 2015년 1월 26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박용선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무분별한 청소년 유해환경시설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1실 1주차 무인 모텔, 안마시술소, 섹시클럽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무인모텔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으로써 “아빠 무인모텔이 뭘 하는 곳이야?”하고 물을 때 얼마나 난처했던지, 차를 몰고 가는 중에도 각종 현수막에 쓰여 있는 ‘연애를 디자인하라’, ‘전 객실 월풀설치’, ‘1객실 1주차장 완비’ 등 민망한 문구들을 철없는 아이들이 읽고 뜻을 물어볼 때 애들러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인모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카운터에 종업원도 없고 자판기처럼 돈 내면 열쇠 떨어지고 남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되는 모텔이라는 뜻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숙박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손님들을 전문적으로 받기 위해 착안된 시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러니 우리나라를 불륜 공화국이라 전 세계 언론에서 조롱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포항의 경우도 오천, 원동, 문덕지구에 난립하고 있는 무인 러브호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문덕지구에는 택지 조성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부분을 두지 않아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모텔, 유흥주점과 학원이 마주보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파트단지와 인접해 생기다보니 창을 열면 바로 눈앞의 러브모텔의 창문과 마주치기까지 합니다. 마을주민들도 흰한 대낮에 남녀가 모인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며 애들 교육상 안 좋고 동네가 유흥가로 변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모텔 내부가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들린다며 주택가에 모텔이 들어서도 되는지, 불법 아니냐며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모텔사이트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 일탈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이 유독 포항뿐이겠습니까? 도내 신도시지역 및 개발지역 등 부도심권으로 급팽창하고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물론, 심지어 농어촌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무인모텔이 생겨날지 가히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인모텔이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적이 있지만 자동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에서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숙박업소 건립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대정화구역의 심의기준을 완화해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가장한 러브모텔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무인모텔 건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기준 강화와 더불어 숙박업소 허가에 다른 건축위원회 심의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조례를 재개정하는 조치가 조속히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둘째, 무인모텔을 광고하는 각종 현수막과 현란한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시설을 절대 출입·이용하지 못하도록 학교당국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인모텔의 성업이 아무리 시대적 흐름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자 경상북도는 정신 문화, 화랑문화, 유교문화의 본고장입니다. 무인모텔 건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텔과 학교, 아파트가 붙어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따로 따지기 전에 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심일 것입니다.

양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규정과 정책은 과감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지켜야 할 권리가 더 중요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전국에서 깨끗하고 건전한 숙박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경상북도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와 위생시설을 관리하는 관련부서에서는 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탈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광경호 의원(교육위원회) ◎

<<현행 조례의 일제정비 필요성>>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새해의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빌면서 더불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경북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제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앞장서며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대진 의장님께서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장직을 맡으셔서 왜곡된 지방자치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선봉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외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경북의 입법인 조례와 자치법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최소한의 법치 인프라마저 정립되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임하댐 건설로 인한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은 1994년에 마무리되어 20년 전에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었다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 와서야 폐지되었던

경상북도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보전추진위원회 조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지난해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 조례정비 대상을 보면 당시 도청에 23건과 교육청에 17건으로 보고되었으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도청 및 교육청 조례 일부를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청의 경우 모든 공문서에서 경북의 영문 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경상북도 기존 조례에는 'K'로 시작하도록 해놓았고, 환경관리공사 설립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공사는 찾아볼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조례였습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의 공적조서와 표창대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도와 교육청의 현행조례 일부에는 상위법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원래의 근거법률이 버젓이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직제 등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맞지 않는 표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문을 잘못된 형식으로 읽고 중단된 사업을 십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례마저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규칙, 규정, 훈령 등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무부가 중앙부서 명칭으로 되어 있고 'PC통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등, 웃지 못할 사례마저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정책의 실현은 자치입법인 조례로 나타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규범 또한 조례로 정립됩니다. 따라서 조례와 규칙 등이 바로 정립되어야만 지역발전과 도민복리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빨리 도청 및 교육청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면조사를 통한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상위법령과 관계된 규칙 등에 대해서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병행 검토하여 개정할 것은 중앙부서에 건의하고 맞지 않는 규칙은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입법은 지역경제성장과 복리향상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헌법상 지역균형발전 책무가 우선이라는 점을 정부에 요구하도록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도권 규제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18일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대기업의 수도권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대거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의 지방공단공동화정책이라고 입을 모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우리 경북도내 구미, 포항, 칠곡 등 신규조성 중인 지방공단에 치명타가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경우 교통과 노동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입주의사를 밝혔던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유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되게 되면 비단 우리도뿐 아니라 비수도권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정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까지 축소될 경우 지방공단과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실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난 2005년 수도권의 8개의 첨단업종에 대해 신증설을 허용한 이후, 이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는 보조금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녹지와 관리지역에 입주한 기존 공장의 건폐율도 20%에서 40%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정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정보기술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얼마 전 금년도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 면세점 네 곳을 허가하면서 그중 서울 시내에 세 곳을 허가하였고 외국관광객 숙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까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서 수도권에 5,000실을 더 짓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도 정부가 수도권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앞으로 수도권 규제를 더욱 완화한다면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사회갈등은 더욱 커져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은 국제 수준이고 비수도권은 재정력이 취약한 동네 수준으로 양분된다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큰 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피폐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최상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 경제투자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최소한의 강점이라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장용지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세와 법인세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장설립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야 합니다. 가령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도록 논의과정에서부터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셋째,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다시 전면에 나서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해온 저력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 한 마디는 지방 사람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명울을 만들고 차라리 변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방민들을 위축되게 만드는지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믿을 건 경북도민 스스로 헤쳐 나가는 길뿐입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정치권, 각 상공인단체, 민·관·산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지방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의 필사즉생의 각오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5년 2월 6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상북도 공공체육시설 개방 촉구>>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개인의 행복추
구권입니다. 이러한 행복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
한 여가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막중
한 의무와 충분한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
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해 놓은 공공시설 인프라 개방이
미비하여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분포된 공공체육시설은 2014년 기준
으로 약 1,730여 개가 있으며, 이 중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등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많은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시설의 관리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분

포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 간 정보 편중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체육시설 분포현황이나 시설의 개방 수준이 다르다는 점도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체육시설은 총 1,015개 학교 중 63%에 달하는 64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된 학교는 497개교, 인조잔디운동장과 천연잔디운동장이 설치된 학교는 149개교로 도내 23개 시·군의 1,73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과 함께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학교체육시설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강당 및 체육관의 연간 개방 실태를 보면 법 따로 현실 따로 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육관 등이 설치된 도내 497개 학교 중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24개교로 겨우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회성으로 개방한 학교는 217개교로 무려 44%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체육관 1개를 건축하는데 드는 평균비용은 약 12억 원으로 497개 체육관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총비용은 5,964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 122개 인조잔디운동장과 27개 천연잔디 운동장의 조성비용은 616억 4,000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학교체육시설에 6,580여 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음을 감안할 때 각 시·군별로 갖추어진 1,730여 개 전문체육시설과 일반체육시설에는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혈세를 투입한 공공체육시설의 굳게 걸어 잠긴 문을 활짝 열어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주민의 건강추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육시설예약시스템 구축과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및 시설 개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래로 우리 선조들은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여겨서 이른바 성주를 모셨습니다. 반가(班家)에서는 한지를 접은 성주 신체(神體)를 대들보에 모셨고, 농어가에서는 향아리 안에 쌀을 담은 성주단지를 집안에 모셨습니다. 성주풀이는 집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할 때, 개인이나 공동체가 복을 빌고자 할 때 어김없이 행해진 의례였습니다.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 가사에는 이런 사설이 나옵니다. “성주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라. 제비원의 솔씨 받아 소평 대평에 던졌더니 그 솔씨 점점 자라 소부동이 되었구나. 소부동이 점점 자라 대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점점 자라 청장목이 되고, 황장목이 되고, 도리 기둥이 되었구나.” 이 내용은 안동 제비원이 성주의 본향이며, 집 짓는데 소용되는 소나무의 본향 또한 안동 제비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동안 전해져온 이 가사

부분은 비단 경상도뿐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모든 성주풀이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의 성주풀이입니다. “이 성주가 누 성주냐,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전북 정읍의 성주풀이입니다. “성주 본향이 어디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전남 진도의 성주가입니다. “성주는 본이 어느메요,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에 술씨 받아...” 강원지역의 성주굿입니다. “제비원에 술씨 받아, 경상도 안동 땅에 대명 산천에 던졌더니...” 경기도 여주의 성주풀이입니다. “성주님네 본이 어디신가,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러라...” 서울지역의 성주풀이입니다. “성주본향이 어드메뇨,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이러라...” 황해도 해주의 성주굿입니다. “성주나 본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의 제비나원이 본일넌데...” 평양의 성주굿입니다. “성주 본향이 어드메냐, 경상도 안동 땅에 제비조천이 본이라...”

이처럼 표현은 서로 다양하지만 성주의 본이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라고 하는 내용만은 팔도 성주풀이 가사의 공통분모입니다. 이는 모든 성주풀이의 시초가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경북의 문화원형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 오랜 세월동안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아 왔음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바로 이러한 보편성을 들어서 관련학계는 안동 제비원을 성주신앙의 성지로 주목합니다.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는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고자 염원했던 민중의 혼을 담아낸 민간신앙이었습니다. 민족사를 관류(貫流)하여 내면화된 민중의 원과 한을 풀어내는 절규였습니다. 구비문학과 음악, 춤사위가 어우러져서 지경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전승된 민중예술 형태의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는 종교적인 신념과는 무관하게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의 원형을 보존·전승하고자 애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제비원문화축전이 열리고, 국악인과 무속인을 포함하여 지역의 고유한 민중문화를 보존하자는 다양한 단체와 시민모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비해 정부의 관심은 미흡했습니다. 1975년 안동포짜기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이래 40년 동안 36건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왔지만,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는 외면됐습니다. 전승되어온 외연을 감안하면 의당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지정문화재로도 지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동 제비원 성주풀이의 보존과 전승에 일생을 바친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절차를 서
둘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6건

☐ 동의안 : 2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
한다.

제 3 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
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
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제 5 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

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 8 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 9 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

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④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영석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5. 2. 6.

발 의 자 : 강영석 의원

찬 성 자 : 홍진규, 고우현, 장경식, 최태림, 최병준,
구자근, 이수경, 남진복, 조현일, 이진락,
곽경호, 정상구, 황병직, 김봉교 의원

1. 수정이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도지사에게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도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골자

-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
- 경영평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3. 수정안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항 중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영 실적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② 생략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u>도지사</u>에게 <u>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u> ④ ⑤ 생략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② 제정안과 같음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u>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④ ⑤ 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 3 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 4 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제 5 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 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 8 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 9 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 영일만신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④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⑤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과 제77조의4”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1. 지급대상

- 경북도청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으로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 제외대상자

-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9호가목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는 사람
- 군복무중인 공익요원, 징병검사 전담의
-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자
-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자

2. 지급액 : 직원 1명당 월 30만원

-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
- 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3. 지급시기 : 다음 달 10일 이내

- 그 달분을 다음 달 초에 지급하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4. 지급기간 : 도청 소재지 이전일부터 3년간. 다만, 신청사 건립·정주여건 조성 및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도청 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신청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한 날부터 도청소재지 이전일 후 3년간으로 한다.

- 도청 소재지 이전일은 신도청 소재지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날로 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5년 1월 29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시행일과 신청사 근무한 날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한 적용시기를 부칙으로 신설 규정하는 것이 조례 성안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

2. 주요내용

- 부칙 시행일과 적용례를 신설 규정함(부칙 안 제1조, 안 제2조).

3. 수 정 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신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한 날부터 소급하여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신청사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 이전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 공무원”이란 경상북도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2. “이주지원비”란 이전기관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 3 조(지원대상) 이주지원비 지원 대상은 이전기관 공무원으로 한다. 제 4 조(지원기준) 이주지원비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 표	경상북도 공무원 이주지원 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 설〉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u> <u>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이 조례</u> <u>시행일 이전에 도청이전</u> <u>준비 등을 위하여 신청사</u> <u>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u> <u>해서는 실제로 근무한 날</u> <u>부터 소급하여 이주지원</u> <u>비를 지급할 수 있다.</u>

[별 표]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1. 지급대상

- 경북도청 본청, 의회사무처, 소방본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으로 신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 제외대상자

- 계약직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적으로 채용된 사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라목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9호가목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는 사람
- 군복무중인 공익요원, 징병검사 전담의
-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자
-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자

2. 지급액 : 직원 1명당 월 30만원

-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을 지급
- 전출, 휴직, 국내외 직무파견, 장기교육 등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3. 지급시기 : 다음 달 10일 이내

- 그 달분을 다음 달 초에 지급하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4. 지급기간 : 도청 소재지 이전일부터 3년간. 다만, 신청사 건립·정주여건 조성 및 도청이전 준비 등을 위하여 도청 소재지 이전일 이전에 신청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한 날부터 도청소재지 이전일 후 3년간으로 한다.

- 도청 소재지 이전일은 신도청 소재지를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는 날로 한다.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 능력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문화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간판과 광고물,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6. “경상북도 토박이말”이란 경상북도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도와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
5. 도 공무원과 도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 6 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 8 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토박이말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9 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도지사는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 및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상북도 토박이말 보전) ① 도지사는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도지사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도민, 공무원 및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종전의 공문서와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학생
수련원”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야영장)”을 “(학생수련원)”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단체야영”을 “단체수련”으로, “야영장”을 “학
생수련원”으로 하며, 제2항,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4항 중 “야영장”을 각각 “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벽지 나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다지역 중 “경상북도 의성학생야영장”,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각각 삭제하며, 라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으로,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으로 하며, 라지역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삭제한다.

②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학생야영장”을 “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별표 3]

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제4항 관련)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과 <u>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u>을 둔다. 제36조(야영장) ① 학생들이 대자연 속에서 단체야영을 통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과 인내력, 지도력 및 자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내에 야영장을 둔다. ②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야영장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야영장 시설, 설비와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영장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 4. 야영장 사용자의 야영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5. 야영장 사용자의 급식 및 양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야영장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34조(설치) _____ _____ _____학생수련원_____. 제36조(학생수련원) ① _____단체수련_____ _____ _____ _____학생수련원_____. ② _____학생수련원_____.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원_____ 2. 학생수련원_____ 3. 학생수련원_____ 4. 학생수련원_____ 5. 학생수련원_____ 6. _____학생수련원_____ ④ 학생수련원_____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학생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 (제36조제4항 관련)			
야영장명	위	치	수련원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청도학생수련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안동학생수련원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삭>		제>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삭>		제>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삭>		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각급학교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4급	4	4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2	-		
전문경력관 소계	6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4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 단위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학교	단위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직속 기관)	교육 지원청 (소속 기관)	공립 학교
총 계	5,289	-			총 계	5,289	-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94	-			일반직 계	4,894	-		
3 급	3	3			3 급	3	3		
3~4급	4	4			3~4급	4	4		
4 급	19	18	1		4 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4,864	-			5급 이하 소계	4,862	-		
전문경력관 소계	4	-			전문경력관 소계	6	-		
연구직 계	6	-			연구직 계	6	-		
연구사	6	-			연구사	6	-		
특정직 계	388	-			특정직 계	388	-		
일반직 4급 상 당 이상 장학관 · 교육 연구관	48	24	24	-	일반직 4급 상 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 구관	48	24	24	-
일반직 5급 상 당 이하 장학관 · 교육 연구관 및 장 학사 · 교육연 구사	340	-			일반직 5급 상 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 구사	340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 양남초등학교상계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양남초등학교 상계분교장	경주시 양남면 화림길 7-3	〈삭제〉	제

■ 동 의 안

-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5년~2018년)
-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제6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2018년)

1. 제안이유

- 경상북도의 제6기(2015년~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을 여는 희망경북, 건강 중심 행복경북」으로 비전을 설정하여 도민건강수준 향상, 지역사회 건강형평성 제고를 정책목표로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 도민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과 홍보를 통한 생명존중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며
- 건강 위협요인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의 발견과 건강행태개선을 유도하고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지역의료 환경개선과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으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정신보건사업
- 암 관리사업
- 건강검진사업
- 병상수급계획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응급의료계획
- 약무 및 마약류 관리사업
-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사업
-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경북 조성(도 시책사업)
- 경상북도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도 시책사업)
-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및 지원계획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목표

가. 중장기 추진과제 및 주요지표

중장기 추진과제	주요 지표	현 황	2015 목표치	2016 목표치	2017 목표치	2018 목표치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건강 실천율	32.1%	33.0%	34.0%	35.0%	36.0%
	성인남자 흡연율	43.4%	40.0%	38.0%	36.0%	34.0%
	성인 고위험음주율	남자 28.6% 여자 6.2%	남자 26.0% 여자 6.0%	남자 24.0% 여자 5.8%	남자 22.0% 여자 5.6%	남자 20.0% 여자 5.4%
	고혈압유병률	29.0%	28.0%	26.5%	25.0%	24.0%
	영아사망률(천명당)	3.0명	2.9명	2.9명	2.8명	2.8명
	치매선별검진수(명)	142,503	200,000	230,000	250,000	270,000
	장애인등록관리율	5%	5%	6%	6%	7%
심뇌혈관 질환예방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	201.6명	201.4명	201.2명	201.0명	200.8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원인병원체 규명률	35%	40%	45%	50%	55%
	영유아 예방접종률	89%	91%	92%	93%	94%
	결핵신고 신환자율	94.7%	86%	77%	70%	63%
정신보건 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40,000명	42,000명	44,000명	46,000명	48,000명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4,000명	4,500명	5,000명	5,500명	6,000명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수	9개소	11개소	13개소	19개소	24개소
	자살률(인구10만명당)	31.1명	29.7명	28.3명	26.9명	25.5명
암 관리 사업	암 검진 수집률	34%	36%	38%	40%	42%
	암 환자의료비 지원	2,992명	3,050명	3,100명	3,150명	3,200명
	재가 암환자관리	4,875명	4,900명	4,930명	4,960명	5,000명
	암 사망률 감소 (연령표준화)	111명	108명	1005명	102명	100명
건강검진 사업	일반건강검진	42%	45%	48%	51%	54%
	생애전환기검진	52%	55%	58%	61%	64%
	영유아건강검진	72%	74%	76%	78%	80%
	비취학청소년	93%	95%	97%	98%	100%
	2차 검진(사후관리)	15%	18%	22%	26%	30%

중 장 기 추진과제	주요 지표	현황	2015 목표치	2016 목표치	2017 목표치	2018 목표치
병상수급 계획	병상수급 모니터링	연1회	연2회	연2회	연2회	연2회
	장기기증 등록기관	25개	35개	37개	40개	45개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수	3,619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공공보건 의료사업	낙상발생감소	3명	3명	2명	1명	0명
	감염관리 수행률	87%	90%	93%	97%	100%
	의료기관 인증제	준비	획득	획득	획득	획득
	의료사회복지서비스	187명	200명	250명	300명	350명
	의료취약계층진료비지원	570명	600명	650명	700명	750명
	노인성질환 무료수술	880명	1,0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500명	500명	550명	600명	650명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8,896명	9,000명	9,200명	9,400명	9,600명
	시설 입소자 무료검진	1,380명	1,500명	1,600명	1,700명	1,800명
	소외계층 지원	467명	500명	550명	600명	650명
	지역아동센터 지원	458명	500명	550명	600명	650명
	특수집단 무료검진	1,050명	1,100명	1,200명	1,300명	1,400명
	방문간호	4,785명	5,000명	5,500명	6,000명	6,500명
	응급의료 역량강화	11,890명	12,000명	13,000명	14,000명	15,000명
	만성질환 관리	5,120명	5,500명	5,700명	5,900명	6,100명
	완화의료관리	556명	600명	650명	700명	750명
지역응급 의료계획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4.1%	5%	6%	7%	8%
	급성심정지환자 생존 퇴원율	2%	2.5%	3%	3.5%	4%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78%	82%	83%	86%	90%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률	67.9%	80%	85%	90%	95%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55.6%	57%	58%	59%	60%

추진분야	주요 지표명	현황	2015 목표치	2016 목표치	2017 목표치	2018 목표치
약무· 마약류 관리사업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수	2,179	2,300	2,530	2,750	3,000
	기획합동 점검건수	930	980	1,050	1,110	1,150
	의약품등 광고·표시 기재점검 적발건수	2,683	1,030	1,050	1,100	1,150
	의약품등 품질관리를 위한 수거·검사건수	173	190	200	220	250
	의료기기판매업소 지도점검건수	483	530	580	630	680
	마약류취급업소 점검률	88%	89%	90%	91%	92%
공중위생· 식품안전 관리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공중위생감시원 교육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40,860 개소	41,000 개소	41,000 개소	41,000 개소	41,000 개소
	유관기관 합동점검 (계절별, 시기별기획)	연10회	연10회	연10회	연10회	연10회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운영	1,650 개소	1,650 개소	1,650 개소	1,650 개소	1,600 개소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7개소	13개소	17개소	18개소	18개소
	유통식품 안전관리	5,000건	5,050	5,050	5,100건	5,100건
치매로 부터 자유로운 경북조성	치매선별검사 수(천명)	170	200	230	250	270
	치매 서포터즈 양성	7,000명	10,000명	12,000명	13,500명	15,000명
	예쁜 치매쉼터 운영	270개소	300개소	330개소	360개소	400개소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11개소	18개소	24개소	25개소	25개소
	거점치매센터 운영	·	3명	6명	9명	9명
	돌봄기관 종사자 교육	·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마을건강위원회 운영	20개소	20개소	20개소	30개소	40개소

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추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총계	합 계	95,687	106,977	99,206	100,791	402,661
	국 비	51,820	59,051	53,344	54,136	218,351
	도 비	14,994	15,582	15,628	15,775	61,979
	시군비	27,813	31,183	28,973	29,520	117,489
	의료원	1,060	1,161	1,261	1,360	4,842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합 계	19,042	19,500	20,000	20,500	79,042
	국 비	9,521	9,750	10,000	10,250	39,521
	도 비	2,856	2,925	3,000	3,075	11,856
	시군비	6,665	6,825	7,000	7,175	27,665
심뇌혈관 질환예방	합 계	2,287	2,300	2,320	2,340	9,247
	국 비	1,144	1,150	1,160	1,170	4,624
	도 비	367	370	375	380	1,492
	시군비	776	780	785	790	3,131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합 계	36,560	36,743	36,927	37,112	147,342
	국 비	19,076	19,171	19,267	19,364	76,878
	도 비	6,103	6,134	6,164	6,195	24,596
	시군비	11,381	11,438	11,496	11,553	45,868
정신보건 사업	합 계	4,103	4,423	5,383	6,183	20,092
	국 비	2,051	2,211	2,691	3,091	10,044
	도 비	885	886	887	888	3,546
	시군비	1,167	1,326	1,805	2,204	6,502
암관리 사업	합 계	4,148	4,230	4,365	4,500	17,243
	국 비	2,074	2,115	2,182	2,250	8,621
	도 비	622	635	655	675	2,587
	시군비	1,452	1,480	1,528	1,575	6,035
건강검진 사업	합 계	554	570	585	598	2,307
	국 비	443	456	468	478	1,845
	도 비	6	6	6	7	25
	시군비	105	108	111	113	437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공공보건 의료사업	합 계	1,765	1,931	2,051	2,170	7,917
	국 비	345	320	340	360	1,365
	도 비	360	450	450	450	1,710
	의 료 원	1,060	1,161	1,261	1,360	4,842
지역응급 의료계획	합 계	10,717	11,100	11,703	12,106	45,626
	국 비	9,266	9,639	10,230	10,625	39,760
	도 비	1,244	1,250	1,260	1,265	5,019
	시 군 비	207	211	213	216	847
약무마약류 관리사업	합 계	171	174	177	180	702
	국 비	5	5	5	5	20
	도 비	77	80	83	86	326
	시 군 비	89	89	89	89	356
공중위생 식품안전 관리	합 계	4,219	4,345	4,475	4,609	17,648
	국 비	1,884	1,940	1,998	2,058	7,880
	도 비	779	805	831	858	3,273
	시 군 비	1,556	1,600	1,646	1,693	6,495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경북조성	합 계	4,389	4,255	4,300	4,200	17,144
	국 비	1,523	1,490	1,390	1,290	5,693
	도 비	1,171	1,141	1,286	1,286	4,884
	시 군 비	1,695	1,624	1,624	1,624	6,567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합 계	1,000	1,200	1,500	1,500	5,200
	국 비	0	0	0	0	0
	도 비	300	360	450	450	1,560
	시 군 비	700	840	1,050	1,050	3,640
시설·장비 확충 및 보강	합 계	6,732	16,206	5,420	4,793	33,151
	국 비	4,488	10,804	3,613	3,195	22,100
	도 비	224	540	181	160	1,105
	시 군 비	2,020	4,862	1,626	1,438	9,946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대 진
2015년 2월 6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

□ 주요내용

가.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원
- 사업규모 : 약 124,870m²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공급세대 : 1,192세대(약 3,217명 수용)
- 근 거 법 : 도시개발법(사업추진)
- 추정사업비 : 약 339억 원(보상비 118억 원,
조성비 175억 원, 기타비용 46억 원)

○ 수익분석

구 분	경제성지수	비 고
NPV	25억 원	(NPV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
B/C	1.0934	(B/C > 1) → 경제적 타당성 확보
IRR	11.76%	(IRR > 5.5%) → 경제적 타당성 확보

나.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17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약 89,501m²(27,100평)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공급세대 : 400세대(약 1,064명 수용)
- 근 거 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관리
계획변경) 및 도시개발법(사업추진)
- 추정사업비 : 약 394억 원(보상비 194억 원,
조성비 170억 원, 기타비용 30억 원)

○ 수익분석

구 분	경제성지수	비 고
NPV	21억 원	(NPV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
B/C	1.065	(B/C > 1) → 경제적 타당성 확보
IRR	7.6%	(IRR > 5.5%) → 경제적 타당성 확보